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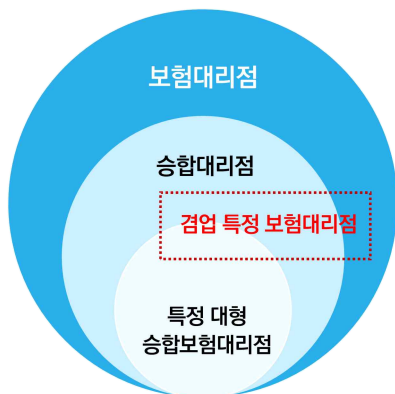
요약

최근 일본에서는 승합·겸업대리점에서 비교추천 편향, 보험금 부정 청구, 보험료 조정 문제가 지속되자 대형 대리점의 내부통제와 보험회사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를 개정함. 보험업법 개정은 법령 준수, 이해상충 관리, 업무 분리, 특별이익 제한을 통해 대리점 영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이러한 변화는 보험대리점 채널의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 GA 제도 개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함

○ 최근 일본에서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승합대리점과 겸업대리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모집과 관련한 보험업법 조항을 개정함¹⁾

- 일본의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과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승합대리점, 타 업무와 함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겸업대리점 등으로 구분됨²⁾
 - 금융감독당국이 199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일사전속 원칙’에서 벗어나 비전속 보험모집을 허용하자 승합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리점의 판매행위가 소비자 선택과 모집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후 2014년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수 또는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겸업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이 추가됨
- 금융청은 2016년 모집규제 개정 이후 대리점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으며, 2024년 전문가 회의에서는 대형 승합대리점과 겸업대리점의 내부통제 미흡,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됨³⁾

〈그림 1〉 일본 보험대리점-모집인의 유형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그림 2〉 일본 보험업법 개정안(2025년)의 주요 내용

| | | |
|---------------|---|--------------|
|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준수책임자·총괄책임자 설치 ■ 불만처리절차 정비 ■ 겸업업무 감시체계 정비 | 대형승합 대형겸업 |
| 보험회사 관리책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업대리점에 대한 관리 강화 : 보험금 지급과 보험영업 업무의 적절한 분리 | 보험회사 |
| 과도한 편의공여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편의공여 금지 ■ 특별이익 금지 행위·대상자 확대 | 보험회사 모집인 |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1) 金融庁(2025. 3.), “保険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30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임
 2) 겸업대리점은 보험상품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대리점(專業代理店)’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업대리점(副業代理店)’으로도 칭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자동차대리점 및 정비공장,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인, 여행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여행사 등이 이에 해당함
 3) 金融庁(2024), “損害保険業の構造的課題と競争のあ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報告書; 金融庁(2024), “保険モニタリングレポート”

-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 목적은 승합대리점과 겸업대리점의 부적절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⁴⁾
 - 승합대리점이 고객 의향보다 대리점 이익을 우선해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편향적 비교추천 사례가 확인됨⁵⁾
 - 중고차 판매·자동차 수리·보험대리점을 겸업하던 기업이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보험금을 과대 청구하는 보험금 부정 청구 사례가 발생함⁶⁾
 - 해당 기업은 수리업과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대형 보험대리점이었기 때문에, 겸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와 대형 대리점의 관리 부재가 함께 논의되는 계기가 됨
 - 기업보험의 공동보험 조성 과정에서 복수의 보험회사가 입찰 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료를 사전 조정한 보험료 조정 행위 사례가 나타남
 - 이는 독점금지법 교육 부족과 내부통제 미흡 등 준법관리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은 ① 대형 승합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②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 강화, ③ 과도한 편의공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그림 2) 참고⁷⁾
 -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겸업특정보험대리점’과 ‘특정대형승합보험대리점’은 법령 준수 책임자와 총괄책임자를 두고, 겸업업무 관리와 불만처리 절차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함(개정법 제294조의 4)⁸⁾
 - 법령 준수 책임자는 영업소에서 모집 업무와 관련한 법령 준수를 지도하는 역할을, 총괄책임자는 본점에서 이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보험회사는 겸업대리점 거래로 소비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탁업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함(개정법 제100조의 2)
 - 내부통제가 미흡한 겸업대리점에 대해 손해사정을 엄격히 하고, 보험금 지급과 영업 부문을 적절히 분리해야 함
 -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 범위를 제한하고, 금지 행위·대상자를 확대함(개정법 제300조 1항)
 -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물품·서비스 제공 등이 금지 행위로 포함되고, 금지 대상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뿐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계자까지 확대됨
 -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직원을 파견해 후선업무를 지원하는 행위도 과도한 편의 제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금융청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비자 중심의 업무 절차가 강화되고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함⁹⁾
 - 최근 문제점이 집중되었던 대형 승합·겸업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리점 시장 전반의 영업행태 개선이 기대됨

4) 金融庁(2025. 3. 7.), “規制の事前評価書”: 金融庁(2025), “保険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5) 金融審議会(2024. 12. 5.), “損害保険業等に関する制度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5回)

6) 金融審議会(2024. 10. 16.), “損害保険業等に関する制度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2回)

7) 金融庁(2025), “保険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説明資料”

8) 2025년 3월 발의된 개정 보험업법은 ‘손해보험 대리점(特定大規模乗合保険募集人)’에 대해 체제정비무를 강화하였으나, 이후 생명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도 ‘내각부령(内閣府令)’을 통해 손해보험 대리점과 동일한 조치가 요구됨; 金融庁(2025. 9. 30.), “規制の事前評価書: 保険業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

9) 金融庁(2025. 3. 7.), “規制の事前評価書: 保険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이번 개정은 ‘특정 대형 승합보험대리점’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적용 범위도 넓음
 - 201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형 특정보험모집인(大規模特定保險募集人)’ 요건은 ① 15개 이상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또는 ② 2개 이상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 및 연간 수수료 수입 10억 엔 이상임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은 약 100개로 추산되며,¹⁰⁾ 이들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정비, 이해상충 방지, 업무 분리 등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됨
- 결국 대형 승합 보험대리점은 다수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업계 전체의 영업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모집 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영업시장 구조 및 모집규제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모집규제 방향과 유사함

-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절차 마련, 최저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 확보, 영업보 증금 현실화, GA의 비교·추천 절차 강화,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정책을 발표함¹¹⁾
 -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상품 추천 과정에서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설명 책임을 강화함
 - 이는 일본이 승합보험대리점의 비교추천 편향성을 문제 삼아, 내부통제·관리책임을 강화한 것과 유사하게, 다 수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채널에서의 ‘중립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을 규율화함¹²⁾
 - 이는 일본이 보험회사의 위탁업무책임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접근과 문제의식을 공유함

○ 특히,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간단보험대리점제도의 경우 일본 겸업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의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정비와 함께 이해상충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10월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함¹³⁾
 - 간단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대리점의 재화·용역과 연계된 상품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업무위탁·겸업 구조가 확대될수록, 일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교추천의 중립성 훼손, 보험금 부정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10) 金融庁(2024. 10. 30.), “第3回金融審議会損害保険業等に関する制度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 22.),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안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2025. 6. 1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5. 30.),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2025. 6. 1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2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2025. 10. 2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